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 민원 제목: 도심 로드킬 유기동물(개, 고양이) 사체 효율적인 처리 방안

□ 신청 취지

- 유기동물이 도로에서 죽었을 경우 주간에는 관할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당직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익일 새벽에 관할 환경미화원이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에 접수받아 당직자가 직접 처리 할 경우 당직실을 이탈해야 함으로 다른 민원대처와 청사 방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익일 환경미화원이 처리할 경우 사체처리 지연으로 교통사고 유발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현재 야간 로드킬 사체 처리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0~1건으로 별도로 유기동물 사체 대행 처리를 위하여 야간 처리반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은 예산 낭비 우려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됨

□ 사실관계

가. 유기동물사체 발생(고양이 80%, 개 20%)

- 여름철: 월 90~100건, 겨울철: 월 40~50건

나. 처리

- 주간: 민원 전화→환경관리과 접수→관할 환경미화원 처리
- 야간: 민원 전화→당직자 접수→당직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익일 새벽에 관할 환경미화원에게 전달 처리

다. 문제점

- 당직자가 야간 사체 처리를 위하여 당직실을 이탈 시 청사 방호와 야간민원 대처에 문제점 발생
- 유기동물 사체가 도로위에 장시간 방치되어 교통사고 유발 및 환경오염 발생

□ 판단 및 결론

가. 야간 당직자 처리

- 당직자는 「▲▲광역시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근무하며, 당직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복무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됨

나. 익일 처리

- 로드킬 유기동물 사체를 익일 처리 시 장시간 방치되어 교통사고 유발 및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으로 즉시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

다. 효율적인 처리방안 검토

- 주간에는 현행과 같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 야간 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신고 접수는 당직자와 담당부서에서 하되 처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용역업체, 유기동물 보호소 등 또는 민간위탁 처리하거나 수거기동반(지역 주민, 자율방범대 등)을 운영하여 대행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 처리 방안이라 판단됨

※ 다만,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필요

□ 민원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에 대한 진정

□ 신청 취지

- ●●동 ○○○-○○번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 건에 대해,
이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형물에 불과한 철골조만 남아있는 상태로 위반사항이 없고 해당 토지 매수 시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등기된 토지와 기허가 받은 주택만 계약서에 특정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가 없으며, 신축허가가 났는데도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2021. 5.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544, 2016. 11. 23.)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한 경우 행위이전 상태로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붕 등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 할지라도 건축 신고제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온전한 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음
- 불법증축 부분은 해당 번지의 건축물에 부합된 부분으로 보이고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불법증축 부분을 소유한 이는 건축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음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위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8. 4.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18. 6. 26.자로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8. 11. 15. 신축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 ■■■■과에서 신청인에게 해당 부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19년 8월과 11월, 2020년 7월에 부과하고, 2020. 9. 16.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발송하였으며, 2021. 4. 2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함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이 불법건축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1. 5. 31.까지 연기하도록 담당부서에 권고함
- 그 외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음